

논평과 제안: 연구자 지원의 특수성 근거,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연구자 조직화의 기본과 다양성, 사회적일자리보장제 도입, 삼균주의의
현대적 확장

임순광(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 위원장)

1. 발표문에 대한 논평과 제안

1) 김민환의 “연구자 권리선언과 연구자복지법”

① 연구자 범주의 축소 경향 우려에 대하여

=> 연구를 체계적 지식, 새로운 지식, 합리적 방법 사용 등으로 가두기보다 더
열어두어야 함.

다만, (지원 대상자가 되는) 연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함. 예) 학력
(학위), 학위과정(재학), 대학 연구원(연구소 등록), 대학 교육자(강의경력), 교
원(법적 근거), 사회적 연구성과물(예: 정당, 시민사회단체에서의 발표문, 보고
서 등)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조건을 갖춘 사람. 지원의 기준은 연구자가
생산한 연구성과물이 되어야 할 것임.

이때, 가치 지향을 연구자 범주나 연구자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
임. 예) 인류 공공의 지적 체계 갱신, 공동체의 진보 등.

② 연대 없는 당사자 운동의 집단이기주의화 우려

=> 공감함. 단결과 함께 연대가 연구자 ‘운동’의 기본이 되어야 함.

한편, 제8조의 “...연구자는 모든 노동자, 시민과 마찬가지로...”는 삭제해도 무
방함.

③ 연구자공제회의 필요성

=> 공감함.

다만, 별도의 연구자공제회를 만들 경우 정부(지자체 포함)의 공공성 확보와 문
화융성국가로의 이행을 전제한 사회보장제도 확장의 일환으로써 대안을 제시
하는 게 연구자공제회만 뚝 떼어내어 요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임.

더 나아가 예술가, 작가, 연구자, 교육자, 발명가 등을 포괄하는 거대 학문교육
문화예술 프로젝트(예: 문화융성국가)로서 전 생애 무상교육(평생고등교육 무상
화)과 공익형 평생고등교육문화예술사업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2) 정민영의 “헌법적 가치로서의 연구자 복지”

① 지적재산권이라는 자유권을 넘어서는 평등권 실현, 문화국가실현을 위한 저작자, 예술가 등 직업군의 권리 보장 논리를 연구자까지 확장

=>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함. 또한 예술가들에게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연구자 블랙리스트(또는 자기검열) 상황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

다만, 블랙리스트는 정권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자공동체 내에서도 적폐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함.

한편, 개별저작자나 예술가의 권리 보장 논의는 역설적으로 저작권이라는 사유재산권(소유권) 보호와 맞물려 오랜 세월 확대되어 오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만약 연구자 권리와 연구자 복지를 연구자의 지적재산권 보장이라는 소유권 논리로 접근한다면 공공성 확대나 카피레프트, 공유의 가치와는 상반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임. 지적재산권을 보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권리는 그것과는 다른 원리(공익성, 행복추구, 인간의 권리 확장 등)가 있어야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연구자 지원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3) 박서현의 “한국 연구자들의 프레카리아트화”

① 교수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

=> 굳이 새로운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임. 불안정노동자(불안정교육연구노동자), 모순적 계급(에릭 올린 라이트) 정도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봄. 호출노동자, 크리넥스노동자 등은 지엽적인 특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노동자 빈곤, 연구자의 빈곤·자기검열·소외·부가노동은 새로운 현상이 아님. 생산양식이나 축적체제의 변화, 자본-국가의 통제력이 강화와 노동의 저항력이 약화 상황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음. 우리 사회는 대졸자 2천만 명 이상의 고학력, 시공간 압축과 디지털 전환, 대학의 기업화와 상업화 그리고 노동에 대한 분할지배, 신자유주의적 교육체제의 지속 등의 조건에서 광범위한 ‘연구(노동)자’가 목소리와 행동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노동조건도 열악해져 가는 상황임.

※ 아래 문단은 발표문에 대한 언급은 아님. 참고사항임.

‘교육’의 내용·과정·방법과 ‘지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 또한 얕은 수준임. 이러

한 상황에서 각계약진의 일부 사업비 확보에만 몰두하는 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을 경우 국립대-사립대, 수도권-비수도권, 대학평가상위대학-하위대학, 정규직-비정규직, 기간제-단기계약제, 대학-비대학, 연구자복지-복지사각지대 등 다양한 경로로 분열이 심화되고 만들어진 대안적 제도조치 형해화되는 결과를 반복할 것임.

② 연구자 조직 역시 대학과의 임노동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만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 동의함.

다만, 임노동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은 방기하거나 약화해서는 안 될 것임. 오히려 기본축(기초)으로 전폭 확대될 때 더욱 힘을 가지고 공론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은 ‘협회’나 ‘연대’ 같은 모임보다 더 왕성한 활동과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임. 자신의 이해관계조차 자신의 소속 사업장에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정부나 특정 사회집단이 대신해 줄 것이라 기대하긴 어려움.

물론 토론자 역시 오랫동안 지금 개별 산별단일노조나 기업별노조의 한계에 대해 거론하여 다양한 조직적 전망을 제시한 바 있음.

그중 일부만 소개하면, 대학별 민주단체협의회, 전국교수·연구자노조연맹(약칭 전교연), 전국교수·연구자협회(약칭 전교협), 전국대학교수·직원·연구자노조(약칭 전교직연) 등을 들 수 있음.

2005년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학내의 여러 단체들과 경북대 민주단체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음. 민주노총의 공무원노조와 전국대학노조 및 일반노조, 총학생회, 민주노총 외 여성노조 등이 주요 참여 단체였음. 민주단체협의회를 통해 제왕적 총장의 독선적 정책을 막아내고 국립대 통합 문제와 낭비적 고층빌딩 건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부당하게 수여하려는 시도도 막아냈고 반민주적이거나 반노동적인 일이 있으면 공동 대응했음. 오래전부터 영남대 역시 민주동문회를 포괄한 민주단체협의회를 통해 박근혜의 재단 복귀를 반대하고 민주총장 선출 투쟁을 한 바 있음. 2018년에는 신 강사법을 무력화하고 강사 대량해고와 교육환경 파괴를 자행하려는 고려대에서 이를 막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유사한 형태라 볼 수 있음.

전국교수연구자노조연맹은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 공공운수노조 연구노조, 대학노조 내 연구 직원, 대학 바깥의 연구원 등

과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를 포괄하는 민주노총 규약상의 산별연맹(개별 산별 노조가 아니라 여러 노조가 하나의 조직체로 묶인 형식)을 의미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 구조조정의 파고가 거세게 몰려오고 있는데 개별 노조로만 버티기에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도 많기에 더욱 그러함. '사용자는 하나인데 노동자는 여럿'인 상황은 복수노조로 인한 노조의 투쟁력 약화와도 비슷함.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이면서도 각 대학별로 구성할 수 있는 '빅 텐트(Big Tent)'를 치는 것이 필요함. 전국교수연구자노조연맹은 각 노조를 해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산별연맹으로 움직이는 형식으로 단순한 협의체나 연합체와는 그 성격이 다름. 민주노총에는 단 한 명의 산별연맹 대표자만 파견되며 중앙집행위원회 또한 1명만 참여하게 되므로 통일성을 좀 더 기할 수 있음. 대학별 조직화에도 용이함.

전국교수연구자협회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 아님. 가입대상은 정규/비정규교수·연구자 모두를 포괄함. 굳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직대상임. 단체들의 연합이 아니라 단일한 조직 아래 개인들이 가입하는 것임. 물론 국립대교수회연합회든 사립대교수협의회든 민교협이든 비정규교수노조나 교수노조든 기존의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전국교수연구자협회를 가입을 결의할 수도 있음. 노동조합보다는 법적인 힘이 없겠지만 이 협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대학 설립유형이나 교원지위 보유 여부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시킬 수 있다는 점임. 둘째, 기존 노조들이나 단체들간의 해소나 합종연횡 없어도 바로 출범할 수 있다는 점임. 이런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 여론전 등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도 있음.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지점도 있어 보임. 기존 조직들에 비해 협회의 성격은 중도적일 가능성이 높음. 또 그럴 때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음. 활동방식도 매우 제약적일 것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토론을 거쳐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공공성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임.

또 다른 조직적 전망은 '전국대학교직원노동조합'임. 전교조와 구분하고 대학 사회의 특징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기 위해 전국대학교수·직원·연구자노동조합(약칭 전교직연)이라 칭할 수도 있겠음.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조직화 경로를 중시함. 2012년 교육노조협의회 결성 당시에도 그러했지만 교육, 특히 대학 교육은 특화되어 조직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도 대학은 초등이나 중등과 분리되어 조직된 경우가 적지 않음. 물론 현재의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노조들간의 여러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교원과 직원 및 연구자들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한동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음. 비정규교수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대학원생노조, 대학노조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수노조와는 조직 통합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험도 다르고 인식구조도 큰 차이가 있고 노동권의 보장범위도 상당히 다를 것이기 때문임. 노동3권을 다 쓸 수 있는 교원, 직원, 대학원생들이 먼저 뭉쳐서 대학 자본에 맞서 파열음을 내야함. 사실 신 강사법 실시와 교원노조법 개정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의 위협에 가장 극단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이들임.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고용은 불안해지며 노동 강도는 점차 더 세질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단결하여 강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 자신들이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모두 잘 알고 있음. 절박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움직여야 할 때임.

③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지향 하에 연구자가 그 일부인 인구 전체의 삶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자·비연구자의 모두의 과제로서 예컨대 공공주택·의료·교통·돌봄·교육·보건 등의 공공서비스를 심화·확대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일부는 시민이 자체적으로 제공·생산·공유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연구자가 담당하고 기획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생산·공유의 다른 상을 만들어가면서 삶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과 같은 공적인 것(the public)에 축적된 자원과 정보, 재화를 인구 전체의 삶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전적으로 공감함. 토론자는 이와 관련 2018년부터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을 강조해 왔고 2021년부터 사회적일자리보장제 도입과 고등교육부문 포함을 여러 토론회와 회의에서 주장해 왔음. 체제 전환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지역사회의 아래로부터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재난 대응, 교육, 의료, 복지, 돌봄, 교통, 주거, 생태,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 등이 주요 분야가 되어야 할 것임. 즉, 관련 연구자가 더 많이 필요하고 할 일이 넘쳐나도록 하며 그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것임. 일자리는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정부(지자체 포함)는 지원을 하는 방식이지 거꾸로가 아님.

4) 김향수의 “여성연구자 경력단절·지체 경험을 통해 본 노동환경과 돌봄권

① 연구자 역시 노동자이면서 돌봄자라는 인식

=>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차별적으로 돌봄을 강요당하고 있

는 건 사실이고 이는 바로잡아야 함. 다만, 성별에 관계없이 처한 조건(특히 빈곤, 사는 곳, 일하는 곳의 특성 등)에 따라 누구나 돌봄자가 될 수도 있음. 자본주의에서 돌봄은 '돈'과 직결됨. 학원을 뺄뺄이 돌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자원을 보유한 사람의 이야기임.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연구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있는 부부 대학강사(연구자)도 있음. 돌봄은 인간성 보호, 공공성 강화의 차원에서 국가의 책무로 되어야 하고 그 권리를 연구자도 보장받아야 할 것임.

② 대학에서의 부모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교수 등 단계별 가족친화정책
=>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기업화된 대학 안에서 자체적으로 흡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것이라 기대하긴 힘들. 정치권력(정부, 의회, 지자체 등)과 연결하여 보편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탁아소 운영, 장애인 시설 접근(차별금지)처럼 돌봄 영역은 대학 밖에서 먼저 만들어져 대학 안으로 강제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음.

또한 가족친화정책은 전 사회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이때 가족의 개념은 이성애자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넘어서야 함. 즉, '가족들' 친화정책이 필요함.

2. 연구자 권리 보장과 확대를 위한 국민 동의 형성 전략

1) 공론화와 실천적 동력의 형성, 연구자 조직화와 존재감 강화

- 3)의 ②에서 일부 언급. 이에 더해서 다음과 같은 고민도 필요해 보임.
-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미정립의 문제
- 한 개인이 연구자와 다른 직업군 사이에서 정체성 중복의 문제
- 무임승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
- 연구자 운동의 전략과 전술론 정립 필요
- 약한 연결망을 어떻게 넓고 강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
- 공론화 기제 조직
-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끌 실천들
- 운동의 안정성 확보
- 의회 활동, 입법 요구, 의회 진출, 입법과 정책과 예산 현실화 등 제도화와 제도 밖에서의 투쟁 병행

2) 위기와 체제 전환기 연구 영역의 전면 확대 정책, 사회적일자리보장제

- 3)의 ③에서 극히 일부지만 언급함. 연구자 권리 보장 및 연구자 지원과 사회적일자리보장제는 방대한 분량이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3) 학문과 문화 융성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원리인 삼균주의의 현대적 재구성과 확장

-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11월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함. 정치에서의 균등, 경제에서의 균등, 교육에서의 균등이 삼균주의인데 궁극적으로 정치·경제에서 균등 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건국강령에는 무상교육 원칙과 지역별 학교 설립까지 언급되고 있음.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소위 우파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수많은 좌우파의 동의가 있었던 국가구성원리로,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1948년에 제정될 때 엄청난 영향을 끼침. 비록 이승만, 유진오 등 당시 지배집단들에 의해 핵심 원리가 훼손되기도 했지만 현재의 헌법에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음. 조소앙이 살던 시절의 ‘교육’과 현시기 ‘교육’ 내용은 많이 달라졌을지라도 교육부문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은 더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유네스코는 1972년과 1996년 두 번에 걸쳐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시키는 ‘교육의 미래’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왔음. 2021년 말 유네스코는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세 번째 보고서를 출간했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세계공동체를 만들어 집단으로 행동해야 하며, 아니면 파멸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인간의 마음을 만드는 교육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임. 이번 유네스코 보고서는 ‘앞으로 모든 교육철학과 체계가 협력과 연대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지금을 격변기, 체제전환기, 새로운 나라 건설이 필요한 시기라 본다면 삼균주의나 유네스코 보고서 등에 담긴 시대정신을 살려 현대에 걸맞은 재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헌법과 법률, 정책과 예산, 지역사회에서의 구체적 실현 등에 대해 탐구해야 할 것임.
- 삼균주의의 재구성 등 새로운 사회구성원리를 전면에 내걸고 그 내용을 채워나갈 때 커먼즈운동을 비롯하여 연구자복지법, 연구자공제회, 문화실현국가, 가족친화정책 등 다양한 논의가 좀 더 정돈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